

제 1장 총칙

제 1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심텍(주)심텍홀딩스, (주)심텍, 신태전자, (주)심텍그래픽스, 관계사, 해외법인 및 자회사, 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의 통제권한이 있는 임직원 모두에 적용한다.

제 2조 (방침)

- ① 회사의 경영이념체계는 핵심가치 ‘INTEGRITY’, 경영전략 ‘FOUNDATION FOR SEMICONDUCTOR’ 및 비전 ‘ENABLE A BETTER WORLD’가 근간이 되어 ‘심텍 Way’를 구성하고 있다.
- ② ‘INTEGRITY(정직 실행)’는 외부 환경 변화와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,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.
- ③ 핵심가치인 ‘INTEGRITY(정직 실행)’를 기초로 하여 ‘FOUNDATION FOR SEMICONDUCTOR’라는 회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.
- ④ 경영전략을 통해 회사가 실현해 나아갈 ‘ENABLE A BETTER WORLD’를 선포하였다.
- ⑤ 회사와 전 임직원은 고객사, 임직원, 주주, 협력사, 지역사회,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핵심가치인 INTEGRITY를 공유하고 실천하며, 반도체산업의 기초가 되어, 더 좋은 세상이 가능하도록 기업 윤리경영을 실천한다.

제 2장 고객사에 관한 규정

제 3조 (고객존중)

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,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.

제 4조 (고객가치)

- ①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②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제공하며,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.

제 5조 (고객보호)

- ① 고객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과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,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.
-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③ 고객의 지적재산권은 존중되고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한다.

제 3장 임직원에 대한 규정

제 6조 (임직원 존중)

- ① 회사는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② 임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- ③ 임직원의 신체, 정신,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,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④ 국제기준과 관련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채용연령과 근로조건 (노동시간, 안전/보건/환경, 복지 등)을 준수한다.

제 7조 (무차별 공정 경쟁)

- ①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, 학력, 연령,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한다.
- ②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.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, 은폐, 독점하지 않는다.

제 8조 (인재 육성)

- ① 임직원에게 교육, 기술 개발,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, 개인의 역량과 업무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② 임직원의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
제 9조 (제보자 보호)

- ① 임직원은 회사의 내부부서 및 각 협력사의 종업원으로부터 윤리 저촉에 가능한 사항을 접하거나 또는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사내에 알리고 보고하여야 한다
- ② 임직원의 기업윤리 저촉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, 신고, 제보 및 내부고발 등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제보 및 내부고발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내부 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한다
- ④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⑤ 회사의 전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공정거래에 저촉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- ⑥ 회사의 전 종업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직위의 이동, 승급, 승진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,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종업원은 윤리경영위원회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10조 (개인정보 보호)

관계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,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
제 4장 임직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

제 11조 (임직원 기본윤리)

- ①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- ② 관련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③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.
- ④ 비윤리·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받은 경우 이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.

제 12조 (규정 준수)

-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“제반 법규” 및 “윤리경영 규정” 등 사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
- ② 전항과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부서의 자문을 받는 등 법적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.
- ③ 국외에 근무하거나 출장 시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규를 준수하여 국가 및 회사의 명예를 드높인다.
- ④ 조직의 직책자는 소속 임직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경영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.
- ⑤ 윤리규정 등 사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.

제 13조 (공정한 직무수행)

- ①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하거나, 금품, 향응접대, 편의 등을 수수 및 제공하지 않으며,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, 그러한 상충이 발생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.

제 14조 (건전한 기업문화 조성)

- ① 다른 임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며,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- ② 임직원 상호 간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.
- ③ 숨김과 과장없이 솔직하게 보고한다.
- ④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한다.
- ⑤ 회식 등 사외 조직활성화 활동은 해당 가이드 및 기준을 준수한다.

제 15조 (회사 자산 보호)

- ① 회사 자산,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.
- ② 회사의 모든 유·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,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.

제 5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규정

제 16조 (주주이익 보호)

- ① 창의와 성실을 통해 성실하게 경영하고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주주의 시장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
- ② 임직원은 법령 및 회사의 정관과 사규를 준수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.

제 17조 (기업 투명성 유지)

- ① 경영자료는 기업경영에 관한 일반 원칙을 존중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한다.
- ② 주주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해당 법규와 일반적인 산업계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한다.

제 18조 (주주 권리보장)

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나 제안을 존중한다.

제 6장 협력사에 대한 규정

제 19조 (자유경쟁 추구)

- ①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 거래 관행에 적극 참여한다.
- ② 회사는 부패방지,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.
- ③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사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.

제 20조 (법규의 준수)

- ①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은 해당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 그리고 회사의 ‘협력회사 윤리경영 활동규정’을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.
- ② ‘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’를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- ③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, 나아가 환경과 인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
- ④ 협력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과 거래절차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.

제 21조 (협력사와 상생협력)

- ① 모든 거래는 관련 법규 및 업계 모범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, 거래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.
- ② 협력사의 지적 재산 및 사업정보는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의해서만 진행한다.
- ③ 거래 검토 및 계약 절차의 일환으로 받은 사업 정보 및 지적 재산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고, 협력사 요구 시 별도의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 보호한다.
- ④ 기술지원 및 경영 협력 등을 통해 협력사가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- ⑤ 회사의 윤리규정 및 윤리행동지침을 전파, 홍보하여 협력사가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.

제 22조 (공정대우)

-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

-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진행한다.
- ②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참여 기업의 대응 업무 기록은 정확하게 반영한다.
 - ③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공정하게 제공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는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
 - ④ 협력사가 인권관련 국제 기준 및 법규를 준수하고,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.

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약속

제 23조 (국가에 대한 의무)

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,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.

제 24조 (사회적 책임)

- ①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,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.
- ② 이해 관계자들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.
- ③ 부정 비리에 관한 제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, 제보자에 대한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하고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.

제 25조 (정치 배제)

- ①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, 정당,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 단,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.
- ② 임직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나,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
제26조 (친환경 경영)

- ① 회사 및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연 보호 및 환경오염의 방지에 노력한다
- ② 회사 및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